

# 임상실습 운영 규정(3-5-36)

최종개정일 : 2018. 06. 0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9조의 2로 규정된 현장실습교과 중 임상실습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임상실습이라 함은 교육의 현장적합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임상기관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, 실무교육 및 실습등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학과) 이규정은 의과대학, 간호대학, 의과학대학의 임상실습을 운영하는 학과에 적용 한다

제4조(임상실습 운영원칙) ① 임상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·기술·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임상실습은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한다.

③ 각 단과대학은 실습생의 전공 분야, 임상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, 실습기관 교육 담당자의 전문성, 임상실습 시설·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다.

제5조(운영내용) 임상실습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내용을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각 단과대학의 내규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.(개정 2018.06.08.)

1. 임상실습 수업계획

2. 수강신청계획

3. 실습기관 교육담당자 및 현장지도계획

4. 지도(담당)교수 현장방문 지도계획

5. 평가방식, 학점부여 근거 및 기준

단, 타기관에서 취득한 실습학점은 1학기당 30시간이상의 실습을 1학점으로 하고 총 임상실습 학점은 졸업학점의 1/4이내로 한다.(개정 2018.06.08.)

6. 기타 임상실습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5조의 2(학점인정심의회) 임상실습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학점인정심의회를 거쳐야 하며,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각 단과대학 내규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.(신설 2018.06.08.)

제6조(임상실습생)

① 임상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본 규정 및 학과 내규 또는 지침에 따른 절차와 기준
2. 임상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
3. 임상실습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

② 임상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.

1. 임상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
2. 임상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
3. 임상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
4. 이 규정에 따른 임상실습 운영 기준 또는 임상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, 학사내규에 따른다.

#### 부 칙

본 규정은 2017년 12월 13일 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본 규정은 2018년 6월 8일 부터 시행한다.